

판사의 역할

이동식/KBS보도국 국제부장

생명의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어디인가? 의학적으로 볼 때 어머니의 몸 안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뒤 세포분열이 시작되면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만 끝날 일은 아니다. 세포분열이 되기 시작한 상태를 일단 생명으로 본다면 어떠한 단계에서건 인공임신중절은 그 자체로 생명을 죽이는 일니까 살인행위가 되리라.

요즈음 미국 등에서 유행하는 냉동수정란, 즉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냉동해 온 수정란이 생명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임신이 안되는 부부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난자를 몸밖으로 꺼내어 실험실에서 정자와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냉동수정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뒤 부부 사이가 별거나 이혼을 한 경우이다.

미국 뉴저지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바로 그런 사례다. 소송을 제기한 이 부부는 수정란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체외수정을 시도해 딸을 얻었다. 그리고는 남은 일곱 개의 수정란을 냉동 저장해 오다가 이혼했다. 수정란을 보관해 온 업체의 규정은 의뢰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 냉동수정란을 폐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남편, 곧 아버지가 그 수정란을 구하려고 소송을 냈다.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아버지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

본인의 희망에 반해 아이를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여성의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것으로서, 냉동수정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냉동 배아에 대한 이혼한 남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수정란을 가져간 남편은 다른 여자를 통해 아

이를 출산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 부인이 원치 않는 아이의 성장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측 변호인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부모가 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렇지만 전남편 측은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된 결정이라며 주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전남편의 변호인은 전 부인이 수정란을 원치 않으면 수정란은 폐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냉동수정란이란 하나의 생명은 살해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이 생명의 존엄성을 다루는 도덕적 원칙에 관한 것인데도 판결은 그러한 존엄성을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생명을 조작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생명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생명인가 하는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된다.

참으로 현대의 판사들은 예전보다 더욱 어려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 같다. 단순한 법률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자의 영역까지를 파고 들어가야 한다.

예전에 냉동수정란의 인권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일단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세포 변화가 있는 만큼 이것도 일종의 생명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냉동수정란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의 생명은 과학이나 법의 이름으로 점점 파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